의안 번호	90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10.28.)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8.(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10. 15.

나. 발 의 자: 성보빈 의원 등 14명

다. 회부일자: 2026. 10.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 10. 28.)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의안번호 제90호)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성보빈 의원)

○ 임산부와 아동 및 동반 가정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 장벽을 낮추고자 함.

○ 양육가정의 여가·문화 향유권을 보장하여 도시 차원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우선입장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우선입장제도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우선입장제도의 권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우선입장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라목 및 제5호다목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4) 「경상남도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행사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나. 조례안예고(2026. 10. 15.～10. 21.) 결과: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가. 제정목적

○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아동이 창원시 및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축제와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 참여 편의를 높이고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 임산부와 아동의 범위 및 우선입장제도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아동의 범위를 12세 이하로 한정한 기준의 타당성과

우선입장 대상에 포함되는 동반 가족 또는 보호자의 범위를 및 인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는

- 우선입장제도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사별 운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인정됨. 다만, 우선입장제도의 시행 요건으로 '기다림이 예측되거나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 발생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행사별로 적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4조[1] 등을 참고하여 대기시간이나 혼잡도 등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는

- 우선입장을 위한 별도 입구 및 안내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는

-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닌 축제등의 주최·주관자에게 우선입장 제도 운영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간 행사 등으로 제도를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재정지원의 대상과 내용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1)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 3,000명 이상**이 모이고,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로, 길거리 행진, 축제, 체육행사,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옥외의 다중운집 행사에 적용한다.

있지 않아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는

- 우선입장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창원시 및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와 각종 행사에 임산부와 아동 동반 가족 등을 위한 우선입장제도를 마련하여 행사 참여 편의를 높이고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임산부와 아동은 장시간 대기나 행사장 혼잡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입장제도를 통해 행사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행사에서 배려 문화를 확산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아동의 범위를 12세 이하로 한정한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동반 가족 또는 보호자의 범위와 인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우선입장 대상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선입장제도의 시행 여부가 대기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이 행사별 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아울러 민간 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 대상과 내용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아동 동반 가족의 행사 참여 편의를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행사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우선입장 대상과 시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기재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 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

참고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지자체명	조 례 명	시 행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025.9.29.(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2025.7.14.
경상남도	경상남도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행사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2026.7.2.
경상북도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2025.5.19.
충청남도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2024.12.30.
충남 논산시	논산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2025.5.12.
충북 진천군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2025.6.30.